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

-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중심으로

위경우*, 최운열**, 이재현***, 이호선****

Preliminary Draft

<요 약>

고정보험료율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는 반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가 강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정보험료율제도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보험제도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보험제도는 부보예금 중 일부를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며,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단순모형화하여 고정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할 경우와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최적위험자산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OECD 30개국 중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하는 28개국의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위험자산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연도별 분석에서는 공동보험제도만이 유의한 음의 계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보험제도는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박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의 제정과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 근간은 차등보험료율제도와 목표기금제의 도입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와 경영효율성의 증대 및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의 도입은 기존의 고정보험료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표기금제의 도입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달성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감면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효율성의 증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에 추가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특성 중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공동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공동보험제도는 일반보험에서 가입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부모예금의 일부를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Demirgüç-Kunt, Karacaovali, Laeven(2005)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가 중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의 9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예금자가 10%의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대신 공동보험제도를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위험추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공동보험제도의 도입은 예금자규율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보험제도는 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들로 하여금 일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므로 예금자들은 공동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예금자들의 은행감시 강화는 곧 예금자규율의 강화로 연결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선애(2002)는 외환위기 이후 예금에 대해 전액보호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시장규율이 부재하였으나 부분보호로의 전환과 더불어 다시 확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송홍선(2006)은 부분보호에 따라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거액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 예금자규율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예금자규율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보험제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에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단순모형을 설정하여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정보험료율제도에 비해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OECD 30개국 중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28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각국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와 공동보험제도 및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시행 모두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을 줄여주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한편 각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공동보험제도만이 유의한 계수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자로 하여금 위기상황의 은행을 피하도록 하는 시장규율의 효과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며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연구모형의 설정을, 5장에서는 주요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II. 선행연구

예금보험제도가 금융 안정망의 일부로 사용된 이후 고정보험료율 하의 예금보험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를 들고 있다(정운찬, 1999). 이러한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Diamond, Dybvig(1986)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White(1989)는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제(deductible), 차등보험료율제도, 공동보험제도 등의 예금보험제도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국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및 도입에 있어 Moysey(1998)는 캐나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장 매커니즘으로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내로우뱅크(Narrow Bank)를 들고 있으며, Hane(1999)은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안들을 정리하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 부보한도의 제한, 공동보험제도의 사용, 위험기반 자본요구, 차등보험료율제도, 시장가치기반 회계, 후순위채권, 내로우뱅크 등을 들고 있다. Laeven(2002)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금자규율을 강화시키고 예금보험의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도입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다.

한편 예금보험제도와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실증연구로 Wheelock, Kumbhaker(1992)는 1920년대 미국 캔자스주의 자발적 예금보험제도의 사례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가입은행의 파산비율이 비가입은행보다 큰 것을 보고하였으며, Demirgüç-Kunt, Detragiache(2002)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61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 은행들의 위험추구를 강화하여 은행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환경이 약할수록 은행위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Cull, Senbet, Sorge(2005)는 잘 정비된 법률과 독립적이고 충분한 재량권을 지닌 감독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관대한 성격의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Gropp, Vesala(2004)는 EU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명시적 예금보험의 도입이 후순위채권자들로 하여금 은행감시자 역할 수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은행의 위험추구가 억제됨을 보였다. 그리고 Gonzalez (2005)는 은행규제가 은행가치와 위험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한 은행규제는 은행가치의 하락과 그에 따른 높은 위험추구유인의 원인이 되는 반면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위험추구유인을 상쇄시켜줌을 보였다.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룬 연구로 Hovakimian, Kane, Laeven(2003)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의 대응치로 은행에 부과해야 할 적정예금보험료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은행자산의 변동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위험추구행위를 증가시키나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예금보장한도와 같은 특성들이 이를 상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정보험료율을 사용하는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강하게 하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후순위채 등과 같은 방안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는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금융시스템이나 규제환경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정보험료율제도만 사용할 때와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인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대차대조표 상의 최적위험자산비율 결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도 대차대조표 상의 위험자산비율을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이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추정된 적정예금보험료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본 Hovakimian, Kane, Laeven(2003)의 연구와의 주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III.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단순화한 모형을 설정한다. 그런 다음 고정보험료율제도 하의 은행 대차대조표 상의 최적위험자산비율과 공동보험제도 및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될 경우의 최적위험자산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3.1. 모형의 환경과 기본가정

은행의 대차대조표 상 차변은 현금 및 예금, 예치금, 국채 등의 무위험자산(R)과 기업대출, 투자유가증권 등의 위험자산(L)로 구성되며, 대변은 예금자의 저축(D)과 자기자본(E)로 구성된다. 여기서 무위험자산 R의 수익률과 예금자 저축 D의 이자율은 편의상 0으로 가정한다.

이 은행 대차대조표에 대해 차변과 대변의 총계를 기준으로 정규화하고 차변 중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β ($0 \leq \beta \leq 1$), 대변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k_0 ($0 \leq k_0 \leq 1$)라 정의하면 은행은 총자산 중 β 의 비율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총자본 중 k_0 의 비율로 자기자본을 보유한다.

이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문제 중 하나는 위험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i 가 투자한 위험자산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tilde{x}_i 라 하고, \tilde{x}_i 는 $[\underline{x}, \bar{x}]$ 의 구간에서 확률밀도함수 $f_i(\tilde{x})$, 누적확률분포함수 $F_i(\tilde{x})$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또한 은행 i 는 규제당국에 예금자의 저축 D에 대해 $y_i D$ 에 해당하는 예금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한다. 즉 은행 i 에 부과되는 예금보험료율은 y_i 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미래 시점의 은행 i 의 이윤 $\tilde{\pi}_i^B$ 은

$$\tilde{\pi}_i^B = R + L\tilde{x}_i - D - E - y_i D \tag{1}$$

로 나타낼 수 있고 앞서의 정규화가정을 이용하여 은행의 파산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beta_i) + \beta_i \tilde{x}_i - y_i(1 - k_0) < 1 - k_0 \quad \text{또는} \quad (1 - \beta_i) + \beta_i \tilde{x}_i < (1 + y_i)(1 - k_0) \quad (2)$$

은행의 파산조건인 식 (2)는 은행 i 가 예금보험료를 지불한 후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총수입이 예금자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를 \tilde{x}_i 에 대해 정리하면 식 (3)과 같으며 여기서 $x_{F,i}$ 는 은행 i 가 파산하게 되는 위험자산의 성과 임계치를 의미한다.

$$\tilde{x}_i < 1 - \frac{k_0 - (1 - k_0)y_i}{\beta_i} \equiv x_{F,i} \quad (3)$$

한편 위험자산의 성과는 $[x, \bar{x}]$ 의 구간에 위치하므로 식 (3)으로부터 은행 i 의 위험자산 투자비를 β_i 의 범위가 $[\beta_i, 1]$ (단, $\beta_i = \frac{k_0 - (1 - k_0)y_i}{1 - x}$)에 위치해야 하며, 더불어 투자비율의 비음조건 ($\beta_i \geq 0$)에 의해 $k_0 - (1 - k_0)y_i \geq 0$ 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더불어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손실은 규제당국에 의해 보전되고 은행은 사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2 고정보험료율제도

먼저 고정보험료율제도와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y 로 고정되며 은행 i 의 이해관계자들의 총이익은 다음과 같다.

$$\tilde{\pi}_i^B = \begin{cases} \tilde{k}_1 - k_0 = \beta_i(\tilde{x}_i - 1) - (1 - k_0)y & \text{if } \tilde{x}_i > x_{F,i} \\ -k_0 & \text{if } \tilde{x}_i \leq x_{F,i} \end{cases} \quad (4)$$

은행이해관계자들의 총이익은 예금자들이 얻는 이윤과 주주들이 얻는 이윤의 합으로 정의되며 예금자들이 얻는 이윤은 예금이자율이 0이고 전액보장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0이 되므로 은행이해관계자들의 총이익은 은행의 주주들이 얻는 이윤, 즉 은행의 이윤과 같다.

이제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익을 계산하면

$$\begin{aligned} E\tilde{\pi}_i^B &= - \int_x^{x_{F,i}} k_0 f_i(x) dx + \int_{x_{F,i}}^{\bar{x}} [\beta_i(\tilde{x}_i - 1) - (1 - k_0)y] f_i(x) dx \\ &= \beta_i(\mu - 1) + \beta_i \int_x^{x_{F,i}} F_i(x) dx - (1 - k_0)y \end{aligned} \quad (5)$$

이 된다¹⁾. 식 (5) 우변의 첫째 항은 은행 i 가 위험자산에 β_i 만큼 투자할 경우 무위험자산에의 투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둘째 항은 은행 i 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얻는 손실이 예금보험에 의해 보전되기 때문에 은행 i 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제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구하기 위해 일계도함수와

1) 식 (5)는 $x_{F,i} \equiv 1 - \frac{k_0 - (1 - k_0)y}{\beta_i}$ 와 부분적분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E\widetilde{\pi}_i^B}{\partial \beta_i} = (\mu - 1) + \frac{\partial}{\partial \beta_i}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 F_i(x) dx \right] = (\mu - 1) + \int_{\underline{x}}^{x_{F,i}} F_i(x) dx + F_i(x_{F,i}) \frac{k_0 - (1 - k_0)y}{\beta_i} \quad (6)$$

$$\frac{\partial^2 E\widetilde{\pi}_i^B}{\partial \beta_i^2} = \frac{\partial^2}{\partial \beta_i^2}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 F_i(x) dx \right] = \frac{[k_0 - (1 - k_0)y]^2}{\beta_i^3} f_i(x_{F,i}) \quad (7)$$

먼저 이계도함수를 살펴보면 $k_0 - (1 - k_0)y$ 는 고정보험료를 y 가 k_0 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값이므로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β_i 는 0보다 큰 값만을 가지게 되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일계도함수의 둘째 항과 셋째 항은 항상 0보다 크므로 μ 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일계도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게 되어 최적위험자산비율은 항상 1이 된다. 한편 μ 가 1보다 작은 경우 최적위험자산비율은 $[\beta_i, 1]$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일계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값 β_i^* 로 정의한다.

3.3 공동보험제도의 도입

고정보험료율제도에 더해 예금의 전액보장이 아닌 공동보험제도가 도입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α 를 무조건 공제하며 예금자는 은행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예금액의 손실정도에 무관하게 무조건 αD 만큼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²⁾.

이 때 은행 i 의 이해관계자들의 총이윤은 다음과 같다.

$$\widetilde{\pi}_i^B = \begin{cases} \widetilde{k}_1 - k_0 = \beta_i(\widetilde{x}_i - 1) - (1 - k_0)y & \text{if } \widetilde{x}_i > x_{F,i} \\ -k_0 - (1 - k_0)\alpha & \text{if } \widetilde{x}_i \leq x_{F,i} \end{cases} \quad (8)$$

은행의 이해관계자들 중 예금자들은 예금이자율이 0이고 은행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αD 만큼의 손실을 경험하는 반면 주주들은 고정보험료율제도와 전액보장의 경우도 동일한 총이윤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윤을 계산하면

$$\begin{aligned} E\widetilde{\pi}_i^B &= - \int_{\underline{x}}^{x_{F,i}} [k_0 + (1 - k_0)\alpha] f_i(x) dx + \int_{x_{F,i}}^{\widetilde{x}} [\beta_i(\widetilde{x}_i - 1) - (1 - k_0)y] f_i(x) dx \\ &= \beta_i(\mu - 1) + \beta_i \int_{\underline{x}}^{x_{F,i}} F_i(x) dx - (1 - k_0)y - (1 - k_0)\alpha F_i(x_{F,i}) \end{aligned} \quad (9)$$

이 되며 일계도함수와 이계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E\widetilde{\pi}_i^B}{\partial \beta_i} = (\mu - 1) + \frac{\partial}{\partial \beta_i}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 F_i(x) dx \right] - (1 - k_0)\alpha f_i(x_{F,i}) \frac{k_0 - (1 - k_0)y}{\beta_i^2} \quad (10)$$

2) 은행의 부도 발생 시 예금자가 자산과 예금액간의 차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으나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

$$\frac{\partial^2 E\tilde{\pi}_i^B}{\partial\beta_i^2} = \frac{\partial^2}{\partial\beta_i^2}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 F_i(x) dx \right] - (1-k_0)\alpha \frac{\partial}{\partial\beta_i} \left[f_i(x_{F,i}) \frac{k_0 - (1-k_0)y}{\beta_i^2} \right] \quad (11)$$

$$= \frac{C}{\beta_i^3} \left\{ \left[C + 2(1-k_0)\alpha \right] f_i(x_{F,i}) - \frac{(1-k_0)\alpha C}{\beta_i} f_i'(x_{F,i}) \right\} \quad (12)$$

$(C = k_0 - (1-k_0)y)$

고정보험료율제도에서의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윤을 나타내는 식 (5)와 비교해보면 식 (9)에서는 기대이윤의 감소를 나타내는 셋째 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예금자들이 공동보험제도로 인해 부담하는 기대손실을 의미한다. 일계도함수 식 (10)은 식 (6)과 비교할 때 셋째 항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 항은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식 (10)은 식 (6)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이계도함수의 경우 첫째 항은 식 (7)과 동일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부호는 둘째 항에 따라 결정된다. 정리하면 식 (12)가 되며 대괄호 안의 둘째 항은 일반적으로 0보다 작으므로³⁾ 경우에 따라 대괄호 안의 부호가 변화하게 된다. 만약 이계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일계도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며 식 (10)을 0으로 만드는 β_i^* 은 β_i^* 보다 작은 값이 될 것이며 이는 고정보험료율제도가 존재할 때와 비교하여 공동보험제도의 도입 후 더 작은 β_i 에서 기대이윤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3.4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차등보험료율제도와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을 가정하고 차등보험료율 y_i 는 은행 i 의 위험자산비율의 함수로 정의될 경우 은행 i 의 이해관계자들의 총이윤은 다음과 같다.

$$\tilde{\pi}_i^B = \begin{cases} \tilde{k}_1 - k_0 = \beta_i(\tilde{x}_i - 1) - (1-k_0)y_i(\beta_i) & \text{if } \tilde{x}_i > x_{F,i} \\ -k_0 & \text{if } \tilde{x}_i \leq x_{F,i} \end{cases} \quad (13)$$

따라서 은행 i 의 이해관계자들의 총이윤과 그 일계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tilde{\pi}_i^B = - \int_{\underline{x}}^{x_{F,i}[y_i(\beta_i)]} [k_0 + (1-k_0)\alpha] f_i(x) dx + \int_{x_{F,i}[y_i(\beta_i)]}^{\tilde{x}} [\beta_i(\tilde{x}_i - 1) - (1-k_0)y_i(\beta_i)] f_i(x) dx \quad (14)$$

$$= \beta_i(\mu - 1) + \beta_i \int_{\underline{x}}^{x_{F,i}[y_i(\beta_i)]} F_i(x) dx - (1-k_0)y_i(\beta_i)$$

$$\frac{\partial E\tilde{\pi}_i^B}{\partial\beta_i} = (\mu - 1) + \frac{\partial}{\partial\beta_i}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y_i(\beta_i)]} F_i(x) dx \right] - (1-k_0)y_i'(\beta_i) \quad (15)$$

$$\frac{\partial^2 E\tilde{\pi}_i^B}{\partial\beta_i^2} = \frac{\partial^2}{\partial\beta_i^2} \left[\beta_i \int_{\underline{x}}^{x_{F,i}[y_i(\beta_i)]} F_i(x) dx \right] - (1-k_0)y_i''(\beta_i) \quad (16)$$

$$= \frac{f_i(x_{F,i})}{\beta_i^3} \left[k_0 - (1-k_0)y_i(\beta_i) + (1-k_0)\beta_i y_i'(\beta_i) \right]^2 - (1 - F_i(x_{F,i}))(1-k_0)y_i''(\beta_i) \quad (17)$$

고정보험료율제도에서의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윤을 나타내는 식 (5)와 비교해보면 식 (14)은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계도함수 식 (15)는 식 (6)과 비교할 때 셋째 항이

3) 예를 들어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한다면 $x_{F,i}$ 는 일반적으로 평균의 왼쪽에 위치하며 이 때 확률밀도함수의 일계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추가되어 있으며 이 항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위험자산투자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일 경우 항상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위험자산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일 경우 식 (15)는 식 (6)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한편 이계도함수 식(16)을 정리하면 식 (17)이 되고 첫째 항은 항상 0보다 큰 반면, 둘째 항을 살펴보면 $(1 - F_i(x_{F,i}))$ 는 항상 0보다 크므로 둘째 항의 부호는 $y_i''(\beta_i)$ 가 0보다 큰 경우 음이 되고, $y_i''(\beta_i)$ 가 0보다 작은 경우 양이 된다. 따라서 $y_i''(\beta_i) > 0$ 인 경우에만 이계도함수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일계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β_i^{***} 이 β_i^* 보다 작게 결정된다. 이는 위험자산비율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형태의 차등보험료율제도가 고정보험료율제도만 존재할 때와 비교하여 더 작은 β_i 에서 기대이윤이 극대화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고정보험료율제도가 내포한 위험추구행위가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단순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정 조건하에서는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위험추구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연구방법론

4.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고정보험료율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위험추구행위를 줄여주는 수단으로 논의되는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줄여주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28개국⁴⁾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Garcia(2000)와 Demirgüç-Kunt, Karacaovali, Laeven(2005)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공동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국가는 9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이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국가는 6개국으로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 미국이다. 고정보험료율제도만을 시행하던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13개국이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재무제표자료는 IBCA의 BankScope 데이터베이스에서 총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은행 중 상업은행만을 추출하였으며 그 중 총자본비율⁵⁾이 제공되는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대상 국가들에서는 공동보험제도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등의 이유로 예금보험제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1>은 각 국가별 연도-은행 쌍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제공되지 않는 은행들이 많아 표본의 수가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표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OECD의 30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며 이중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5) 총자본비율은 BIS자본비율을 의미한다.

<표 1> 국가별 연도-은행 개수

국가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오스트리아	4	3	3	3	13
벨기에	3	3	3	3	12
캐나다	18	18	17	17	70
스위스	4	4	3	5	16
체코	8	7	9	8	32
독일	12	11	11	11	45
덴마크	13	11	12	11	47
스페인	2	2	3	1	8
핀란드	3	1	0	0	4
프랑스	19	16	12	11	58
영국	10	8	8	6	32
그리스	0	0	2	3	5
헝가리	7	6	7	6	26
아일랜드	2	2	3	3	10
아이슬란드	2	2	2	1	7
이탈리아	34	44	45	46	169
일본	134	135	133	131	533
한국	14	15	14	15	58
룩셈부르크	14	11	13	16	54
멕시코	7	8	8	10	33
네덜란드	12	13	15	16	56
노르웨이	6	6	9	8	29
폴란드	5	2	2	5	14
포르투갈	2	1	1	1	5
스웨덴	4	5	4	3	16
슬로바키아	4	7	5	7	23
터키	6	7	12	15	40
미국	616	605	584	565	2370
총계	965	953	940	927	3785

4.2. 분석방법 및 연구가설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대용변수로 개별 은행의 위험자산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해 국채나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위험자산비율(RA1)로 계산하였으며 더불어 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을 추가하여 계산한 값(RA2)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예금보험제도의 국가별 특성인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와 차등보험료율제도(RiskAdj)의 도입 여부는 두 개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도입국가의 모든 은행들에 대해 1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앞의 단순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은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투자비율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들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효과가 없다면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 변수의 부호는 (-)가 될 것이다.

은행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의 재무제표에서 계산가능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먼저 은행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n(TA))을 사용하였다.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자산 투자에 의한 위험의 증가를 분산시키거나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위험추구행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위험추구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요구불예금비율(DD/TL)로 요구불예금 및 단기예금의 합을 부채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

다. 요구불예금은 그 조달비용이 다른 자금조달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도 충분한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위험추구의 유인이 적을 것이다. 대출비율(TCL/TA)은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대출자산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대출이나 부실기업대출의 경우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위험자산비율이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자산의 특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출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전체적인 안전자산보유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비율에는 음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⁶⁾. 비이자이익비율(NIR/OI)은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을 제외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영업에서 대출이나 위험자산투자와 같은 수익원 이외의 수수료와 같은 다른 수익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른 수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위험추구의 유인이 적을 것이다. 매출액순이익비율(NIM)은 매출액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높은 은행은 그 이유를 위험추구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위험추구로 인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또는 비용측면의 우위에 의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위험자산비율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자본비율(TCR)은 자기자본의 규모를 나타내므로 총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주주들의 위험추구성향이 반영되어 더 높은 위험자산비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총자본비율에는 보완자본(Tier-2 capital)이 포함되어 주주뿐만 아니라 후순위채 채권자들의 감시효과가 반영되어 위험자산비율과의 양의 관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RA1은 국채나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RA2는 이에 더해 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값이다. ln(TA)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이며 DD/TL은 요구불예금을 총부채로 나눈 값이다. TCL/TA는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NIR/OI는 비이자이익을 총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NIM는 매출액순이익비율을, TCR은 총자본비율을 의미한다.

변수명	예상부호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RA1		0.222	0.208	0.152	0.986	0
RA2		0.241	0.231	0.149	0.986	0
ln(TA)	+	22.979	21.873	2.955	32.863	16.470
DD/TL	-	0.829	0.935	0.278	1.0	0
TCL/TA	-	0.618	0.656	0.190	1.263	0
NIR/OI	-	0.298	0.260	0.349	7.369	-12.618
NIM	+/-	0.036	0.037	0.022	0.559	-0.041
TCR	+	0.144	0.117	0.158	3.357	-0.407

<표 2>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예상부호를, <표 3>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그다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자산비율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요구불예금비율, 대출비율, 비이자이익비율, 매출액순이익비율은 예상과 같이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총자본비율은 예상대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나 총자산 규모는 예상과 반대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절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6) 은행의 자산구성이 안전한 대출과 위험자산로만 구성된다면 대출비율과 위험자산비율은 -1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나 실제 은행의 자산구성에는 고정자산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표본의 상관계수는 -0.5 정도로 계산되었다.

를 이용한다.

<표 3> 상관계수표

RA1은 국채나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RA2는 이에 더해 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값이다. ln(TA)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이며 DD/TL은 요구불예금을 총부채로 나눈 값이다. TCL/TA는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NIR/OI는 비이자이익을 총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NIM는 매출액순이익비율을, TCR은 총자본비율을 의미한다.

	RA2	ln(TA)	DD/TL	TCL/TA	NIR/OI	NIM	TCR
RA1	0.986***	-0.066***	-0.109***	-0.516***	-0.011	-0.132***	0.065***
RA2		0.011	-0.134***	-0.488***	-0.022	-0.146***	0.041***
ln(TA)			-0.104***	-0.036**	0.112***	-0.355***	-0.105***
DD/TL				-0.139***	0.068***	0.022***	-0.011***
TCL/TA					-0.240***	0.306***	-0.337***
NIR/OI						-0.134***	0.103***
NIM							-0.049***

1)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V. 실증결과

<표 4>는 은행의 위험자산비율 RA1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위험자산비율 RA1에 대해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고정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할 때보다 공동보험제도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할 경우 은행의 위험자산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은행의 위험추구유인에 대한 제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총자산규모, 요구불예금비율은 예상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대출비율, 비이자이익비율은 예상과 일치하는 유의한 계수가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비율은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여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높은 은행들이 위험자산에의 투자에 의해 순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측면에서의 우월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총자본비율은 예상과 달리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총자본비율로 대표되는 은행감독 및 규제 효과가 주주들의 위험추구성향을 제한하여 오히려 위험자산보유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각 연도별 하위표본을 사용한 결과는 전체표본을 사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여부에 관한 더미변수의 부호는 유지되지만 그 유의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공동보험제도는 각 연도별 하위표본에 대해서도 유의한 계수를 보이는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자로 하여금 위기상황의 은행을 피하도록 하는 시장규율의 효과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로 존재하는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 위험자산비율 RA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RA1은 국채나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RA2는 이에 더해 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값이다. ln(TA)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이며 DD/TL은 요구불예금을 총부채로 나눈 값이다. TCL/TA는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NIR/OI는 비이자이익을 총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NIM는 매출액순이익비율을, TCR은 총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RA1				
	전체표본	2000년표본	2001년표본	2002년표본	2003년표본
상수	0.5159*** (13.941)	0.5364*** (7.831)	0.5371*** (7.280)	0.5220*** (6.548)	0.4372*** (6.356)
Coinsurance	-0.0945*** (-5.619)	-0.0786** (-2.302)	-0.0963*** (-2.598)	-0.1314*** (-3.749)	-0.0809*** (-2.823)
RiskAdj	-0.0385* (-1.881)	-0.0459 (-1.189)	-0.0417 (-1.045)	-0.0475 (-1.160)	-0.0134 (-0.310)
ln(TA)	0.0007 (0.516)	0.0021 (0.973)	-0.0009 (-0.380)	0.0014 (0.536)	0.0063*** (2.674)
DD/TL	-0.0092 (-0.612)	-0.0140 (-0.450)	0.0241 (0.814)	-0.0279 (-0.817)	-0.0150 (-0.631)
TCL/TA	-0.6096*** (-33.161)	-0.6489*** (-18.460)	-0.6088*** (-16.940)	-0.6042*** (-15.891)	-0.6419*** (-20.797)
NIR/OI	-0.0525** (-2.534)	-0.1483*** (-5.751)	-0.0237** (-1.979)	-0.0656* (-1.605)	-0.1833*** (-8.045)
NIM	-0.5237*** (-4.475)	-0.7192*** (-3.422)	-0.6575*** (-3.301)	-0.6455** (-2.291)	-0.4392*** (-3.622)
TCR	-0.1359*** (-4.084)	-0.1408*** (-3.919)	-0.1957*** (-4.009)	-0.0889 (-1.135)	-0.0700 (-1.062)
# of Obs	3785	965	953	940	927
Adj. R2	0.645	0.678	0.643	0.635	0.678
F stat	299.815***	102.686***	86.631***	82.786***	98.676***

1)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는 은행의 위험자산비율 RA2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위험자산비율 RA2에 대해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고정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할 때보다 공동보험제도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사용할 경우 은행의 위험자산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위험자산비율 RA1을 사용한 앞서의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연도별 하위표본을 사용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보험료율제도 하에서 항상 지적되는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공동보험제도와 위험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모두 효과적으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고정보험료율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공동보험제도는 각 연도별 하위표본에 대해서도 유의한 계수를 보이는 반면 위험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자로 하여금 위기상황의 은행을 피하도록 하는 시장규율의 효과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로 존재하는 반면 위험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보완으로 공동보험제도와 위험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각 제도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손실을 강제하므로 기존의 전액보장제도에 익숙한 예금자들의 반발이 존재할 수 있으며,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의 감시기능확대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감독 중복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한다.

<표 5> 위험자산비율 RA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RA1은 국채나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RA2는 이에 더해 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값이다. ln(TA)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이며 DD/TL은 요구불예금을 총부채로 나눈 값이다. TCL/TA는 총대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NIR/OI는 비이자이익을 총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NIM는 매출액순이익비율을, TCR은 총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RA2				
	전체표본	2000년표본	2001년표본	2002년표본	2003년표본
상수	0.5086*** (13.347)	0.5272*** (7.424)	0.5337*** (7.046)	0.5107*** (6.283)	0.4286*** (6.108)
Coinurance	-0.0789*** (-4.523)	-0.0650* (-1.850)	-0.0736* (-1.948)	-0.1226*** (-3.334)	-0.0638** (-2.052)
RiskAdj	-0.0499** (-2.429)	-0.0535 (-1.361)	-0.0504 (-1.259)	-0.0657 (-1.600)	-0.0262 (-0.608)
ln(TA)	0.0011 (0.869)	0.0026 (1.123)	-0.0007 (-0.294)	0.0022 (0.794)	0.0067*** (2.793)
DD/TL	-0.0100 (-0.646)	-0.0170 (-0.528)	0.0258 (0.845)	-0.300 (-0.860)	-0.0142 (-0.584)
TCL/TA	-0.5835*** (-30.845)	-0.6284*** (-17.336)	-0.5742*** (-14.732)	-0.5832*** (-15.000)	-0.6133*** (-19.300)
NIR/OI	-0.0542*** (-2.832)	-0.1470*** (-5.400)	-0.0262*** (-2.582)	-0.0673* (-1.677)	-0.1804*** (-7.572)
NIM	-0.3767*** (-3.462)	-0.4101* (-1.791)	-0.5792** (-2.416)	-0.3899 (-1.286)	-0.3617*** (-3.369)
TCR	-0.1443*** (-4.205)	-0.1487*** (-4.017)	-0.213*** (-4.215)	-0.0935 (-1.175)	-0.0711 (-1.044)
# of Obs	3785	965	953	940	927
Adj. R2	0.602	0.639	0.588	0.601	0.640
F stat	250.334***	86.303***	68.963***	71.607***	83.356***

1)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에 공동보험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단순모형을 설정하여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고정보험료율제도에 비해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OECD 30개국 중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28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각국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와 공동보험제도의 도입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시행 모두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을 줄여주는 효과가 존재하며 각 연도별로 개별 분석한 결과는 공동보험제도만이 유의한 계수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동보험제도는 예금자로 하여금 위기상황의 은행을 피하도록 하는 시장규율의 효과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로 존재하는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시장변수들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각 개별은행의 주가와 그에 따른 주가변동성을 사용하여 시장에서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경제전체적인 여건에 따라 은행의 위험추구행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양한 시장변수들을 추가적

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은행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윤의 총합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은행과 예금자, 예금보험기관 간의 게임과 같은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송홍선,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7권 제2호, pp. 39-64, 2006.
- 전선애, 우리나라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제31권, pp. 365-393, 2002.
- 정운찬,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Cull, R., L. W. Senbet, and M. Sorge, "Deposit Insurance and Financial Development",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7, No. 1, pp.43-82, 2005.
- Demirgüç-Kunt, A. and E. Detragiache, "Does deposit insurance increase banking system sta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49, pp.1376-1406, 2002.
- Demirgüç-Kunt, A., B. Karacaovali, and L. Laeven, "Deposit Insurance around the World: A Comprehensive Databas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628*, 2005.
- Diamond, D. W. and P. H. Dybvig, "Banking Theory, Deposit Insurance, and Bank Regulation".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1, pp.55-68, 1986.
- Garcia, G. G. H., "Deposit Insurance: Actual and Good Practi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casional Paper 197*, 2000.
- Gonzalez, F., "Bank regulation and risk-taking incentiv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bank risk",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29, pp.1153-1184, 2005.
- Gropp, R. and J. Vesala, "Deposit Insurance, Moral Hazard and Market Monitoring", *Review of Finance*, Vol. 8, No. 4, pp.571-602, 2004.
- Hane, G., "Deposit Insurance Reform: State of the Debate". FDIC Banking Review, Vol. 12, No. 3, pp.1-26, 1999.
- Hovakimian, A., E. J. Kane, and L. Laeven, "How Country and Safety-Net Characteristics Affect Bank Risk-Shifting",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23, No. 3, pp.177-2004, 2003.
- Laeven, L., "Pricing the Adoption of Deposit Insurance: The Case of Russia", *World Bank Working Paper*, 2002.
- Moysey, A. W., "Deposit Insurance and Other Compensation Arrangements", *Research Paper Prepared for the 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anadian Financial Services Sector*, 1998.
- Wheelock, D. C. and S. C. Kumbhaker, "The Slack Banker Dances; Deposit Insurance and Risk-Taking in the Banking Collapse of the 1920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1992-002A*, 1992.
- White, L. W., "The Reform of Federal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4, pp. 11-29, 1989.